

공고내용

페이지 : 1/2

게재(요청)일자	2015-02-17	담당부서	공원녹지과	김진찬
고시공고구분	공고(입법예고)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5-160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			
내용	<p>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5 - 호</p> <p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</p> <p>2015년 2월 17일</p> <p>성 동 구 청 장</p> <p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</p> <p>제정안 입법예고</p> <p>1. 제정이유</p> <p>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</p> <p>2. 주요내용</p> <p>가. 목적(안 제1조)</p> <p>- 성동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</p> <p>나.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)</p> <p>- 지원물량,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, 지원신청 및 절차 정보제공 등</p> <p>다. 지원대상(안 제4조)</p> <p>- 관련법규에 의거 사용승인된 단독, 공동주택, 노유자 및 연구시설 등</p> <p>라. 지원내용(안 제5조)</p> <p>- 수목전지, 식재 및 고사목 처리 및 병해충방제, 자문 및 지도 등</p> <p>3. 의견제출</p> <p>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참조: 공원녹지과, 전화 02-2286-5661, FAX: 2286-593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
내용	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 ? 반여부와 사유) 나. 성명(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
----	--